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사법보좌관 권순성
건명	이택중 소유물(2024타경11452)
감정평가서번호	DM242-102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85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 2층(봉명동, 기업은행)
TEL : 043-277-1188 | FAX : 043-277-1190 | www.idab.co.kr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홍규 (인)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중부지사 지사장 이홍규 (인)

감정평가액	구천삼백칠십사만원정 (\93,740,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사법보좌관 권순성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택중 (2024타경11452)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06	2024.10.28 ~ 2024.11.06	2024.11.06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원/m ²)	금액(원)
	토지	2,662	토지	2,662	-	91,640,000
	제시외 수목	1식	수목	1식	-	2,100,000
		이	하	여	백	
합계					\93,74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임종필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평가는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소재 "수두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11.06.임.

3.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4.10.28.~2024.11.06.까지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 의견

1.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④ 대상물건의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 등 관련된 제법령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제반 비교요인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 하여 시점수정을 행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토지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건 토지는 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5.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6. 그 밖의 사항

- 1. 일련번호(3)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수종·수량·규격 등을 조사하여 제시외 수목으로 별도 감정평가하였으니,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하시기바람.
- 2. 일련번호(1, 2, 3)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비닐하우스 및 정자가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비교적 용이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3. 일련번호(3, 4) 토지의 석물(조경석, 경계석)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4. 일련번호(1) 토지는 소하천 예정지에 저촉되어 공법상제한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일련번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된 상태인바, 현재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6.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본건 감정평가를 위해 기재한 거래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재지 일부를 비식별 표기(○ ○○) 하였음.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원/㎡)	금 액(원)	
1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176-6	답	보전관리지역	192	192	30,000	5,760,000	
2	"	167	답	보전관리지역	1,425	1,425	17,000	24,225,000	
3	"	250-26	전	보전관리지역	525	525	59,000	30,975,000	
4	"	250-27	전	보전관리지역	520	520	59,000	30,680,000	
	소 계							₩91,640,000	
ㄱ	[제시외 수목]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합 계	250-26 위 지상		수목	1식	1식	-	2,100,000	
				이	하	여	백	₩93,7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1. 대상물건 개요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비고
1	수두리 176-6	답	192.0	보전관리지역	전	부정형	
2	수두리 167	답	1,425.0	보전관리지역	토지임야(일부) 임야화	부정형	
3	수두리 250-26	전	525.0	보전관리지역	전	사다리	
4	수두리 250-27	전	520.0	보전관리지역	전	사다리	
합계			2,662.0				

※ 평가대상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2.1.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2.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형상	공시지가 (원/㎡)	비고
			이용상황	도로교통	지세		
A	양산면 수두리 187	2,780.0	전	보전관리	부정형	12,500	
			전	세로(가)	평지		
B	양산면 수두리 250-25	538.0	전	보전관리	가장형	18,100	
			전	세로(가)	평지		

2)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2.3. 시점수정

1) 지가변동률

- 대상기간 : 2024.01.01. ~ 2024.11.06.
- 대상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지가변동내역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01.01. ~ 2024.09.30.	0.253%	누 계
2024.10.01. ~ 2024.11.06.	0.011%×37/30	9월 지가변동률 : 0.011%
누 계	0.267% (1.00267)	$(1+(0.00253)) \times (1+(0.00011) \times 37/30)$

시점수정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2024년 10월, 2024년 11월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아 2024년 9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당해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추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선정사유

지가변동률은 당해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이며, 일반재화의 변동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2.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2.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농경지대(전))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A	-	1.00	1.00	1.00	0.80	1.00	0.800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 소하천 예정지에 저축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2	A	-	0.70	1.00	0.65	1.00	1.00	0.455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도로(농로)의 상태 및 접근성 등)에서 열세,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형상, 고저 및 지세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B	-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함.								
4	B	-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함.								

2.6.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죽산리 ○○○	전	2,102.0	보전관리 전	24,000	2022.03.22. 경매	
2	구강리 ○○○	답	5,031.0	보전관리 전	45,000	2024.03.21. 시가참고	
3	죽산리 ○○○	답	1,679.0	보전관리 답	19,000	2024.07.02. 공매	
4	구강리 ○○○	답	1,048.0	보전관리 답	25,850	2024.07.17. 취득처분	평균단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기타 참고자료

① 본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01.0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금액 (원)
1	수두리 176-6	답	192.0	12,100	2,323,200
2	수두리 167	답	1,425.0	752	1,071,600
3	수두리 250-26	전	525.0	18,100	9,502,500
3	수두리 250-26	전	525.0	18,100	9,502,500
합계			2,667.0		22,399,800

② 경매통계분석

[출처 : www.ggi.co.kr]

구분	소재지	기간	낙찰가율 (%)	낙찰건수	비고
전	영동군	최근1년	51.41	13	
답	영동군	최근1년	58.45	7	

③ 본건 및 인근토지의 지가수준

소재지 (지리적위치)	도로조건	이용상황	지가수준 (원/㎡)	비고
본건 인근	맹지	전, 답	10,000 ~ 20,000	
본건 인근	세로(가)	전, 답	30,000 ~ 7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7.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산식

$$\begin{aligned} \text{평가사례기준 대상토지가액} &= \text{평가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 \text{공시지가기준 대상토지가액} &= \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end{aligned}$$

2) 평가사례의 채택

평가사례중에서 용도지역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평가사례(1, 2)을 선택 하였음.

3) 평가사례를 기준한 대상토지가액

일련번호	사례토지 기호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1	1	24,000	1.01777	1.00	1.218	29,751
3	2	45,000	1.00188	1.00	1.320	59,512

①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기 호	기 간	대상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평가사례 1	2022.03.22. ~ 2024.11.06.	영동군 보전관리지역	1.777% (1.01777)
평가사례 2	2024.03.21. ~ 2024.11.06.	영동군 보전관리지역	0.188% (1.00188)

②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평가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③ 개별요인

일련번호	사례토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1	-	1.45	1.00	1.05	0.80	1.00	1.218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도로(농로)의 상태 및 접근성,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 획지조건(고저 및 지세 등)에서 우세, 행정적조건(본건 소하천 예정지에 저축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3	2	-	1.10	1.00	1.20	1.00	1.00	1.320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도로(농로)의 상태 및 접근성 등)에서 우세, 획지조건(형상, 조성의 정도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4) 공시지가를 기준한 대상토지가액

일련번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1	A	12,500	1.00267	1.00	0.800	10,027
3	B	18,100	1.00267	1.00	1.000	18,148

5) 평가사례를 기준한 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액과의 보정치

일련번호	평가사례 기준 단가(원/㎡)	공시지가 기준 단가(원/㎡)	산출보정치	비고
1	29,751	10,027	2.967	
3	59,512	18,148	3.279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와 같이 평가사례를 기준한 대상토지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한 대상토지 가액 간에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며, 인근지역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방매사례, 현지조사 가격수준,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참작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련번호	평가사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적용 대상토지 비교표준지
1	평가사례 # 1	2.95	A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평가사례 # 2	3.25	B
---	----------	------	---

2.8. 토지 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12,500	1.00267	1.00	0.800	2.95	29,579	30,000
2	A	12,500	1.00267	1.00	0.455	2.95	16,823	17,000
3	B	18,100	1.00267	1.00	1.000	3.25	58,982	59,000
4	B	18,100	1.00267	1.00	1.000	3.25	58,982	59,000

2.9.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192.0	30,000	5,760,000	
2	1,425.0	17,000	24,225,000	
3	525.0	59,000	30,975,000	
4	520.0	59,000	30,680,000	
합계	2,662.0		91,640,000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1. 산출근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가. 비교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1	수두리 ○○○	전	555.0	보전관리 전	54,000	2019.06.28.	
2	호탄리 ○○○	전	1,478.0	보전관리 전	37,200	2023.11.30.	
3	호탄리 ○○○	전	1,253.2	보전관리 전	12,200	2023.10.12.	
4	죽산리 ○○○	답	1,232.0	보전관리 답	34,800	2023.10.13.	
5	호탄리 ○○○	전	527.0	보전관리 과수원	53,600	2023.05.23.	

나. 비교사례 선정 의견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 중 주변시세 등을 감안할 때 비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2, 5)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3.3. 사정보정

사정보정 의견	사정보정 결정치
사정보정이란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의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 등을 발견할 수 없음.	1.00

3.4. 시점수정

기 호	기 간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교사례 # 2	2023.11.30. ~ 2024.11.06.	영동군 보전관리지역	0.298% (1.00298)
비교사례 # 5	2023.05.23. ~ 2024.11.06.	영동군 보전관리지역	0.596% (1.0059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5.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3.6. 개별요인 비교

일련번호	비교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2	-	1.00	1.00	1.00	0.80	1.00	0.800
	비교사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 소하천 예정지에 저축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2	2	-	0.80	1.00	0.60	1.00	1.00	0.480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도로(농로)의 상태 및 접근성 등)에서 열세, 획지조건(형상, 경작의 편부, 고저 및 지세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3	5	-	1.00	1.00	1.10	1.05	1.00	1.155
	비교사례 대비 획지조건(형상, 조성의 정도 등)에서 우세, 행정적조건(거래사례 접도구역에 저축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4	5	-	1.00	1.00	1.10	1.05	1.00	1.155
	비교사례 대비 획지조건(형상, 조성의 정도 등)에서 우세, 행정적조건(거래사례 접도구역에 저축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3.7. 토지 단가의 산출

일련번호	비교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결정단가 (원/㎡)
	기호	단가(원/㎡)					
1	2	37,200	1.00	1.00298	1.00	0.800	30,000
2	2	37,200	1.00	1.00298	1.00	0.480	18,000
3	5	53,600	1.00	1.00596	1.00	1.155	62,000
4	5	53,600	1.00	1.00596	1.00	1.155	6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192.0	30,000	5,760,000	
2	1,425.0	18,000	25,650,000	
3	525.0	62,000	32,550,000	
4	520.0	62,000	32,240,000	
합계	2,662.0		96,200,000	

4. 감정평가액의 결정

4.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평가방법	시산가액 (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91,640,000	
거래사례비교법	96,200,000	

4.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대상부동산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4.3.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원)	91,640,000
----------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소재 "수두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일련번호(1, 3, 4) 토지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2) 토지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남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의 봉수대길이 소재하여 제 61번 지방도로 및 501번 지방도로와 연계가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황

일련번호(1) :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완경사 및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전)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동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 : 서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4) : 서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9-08-26)(대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0-05-25)(대곡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외의 물건

일련번호(3)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1, 2, 3)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및 이동 가능한 정자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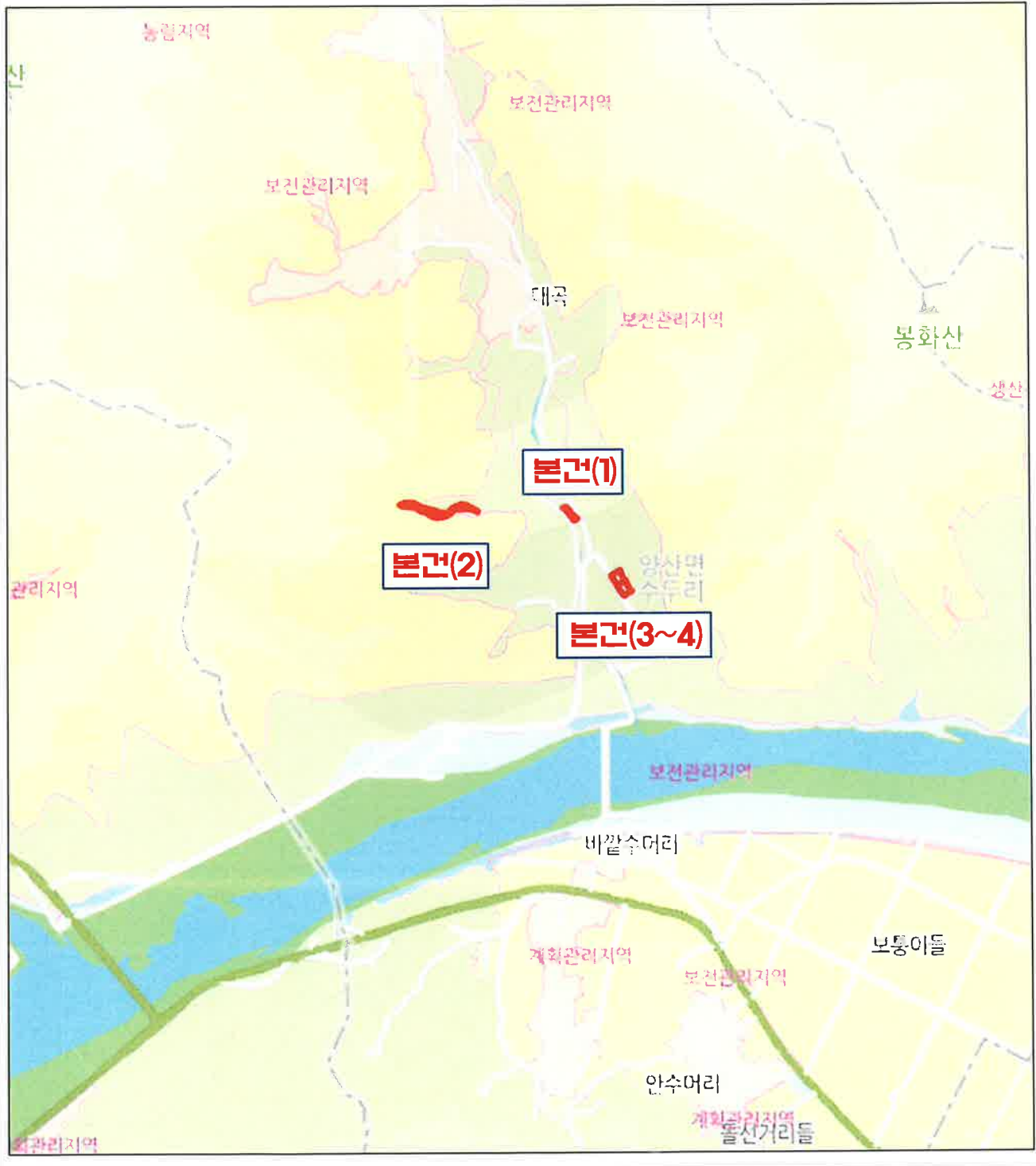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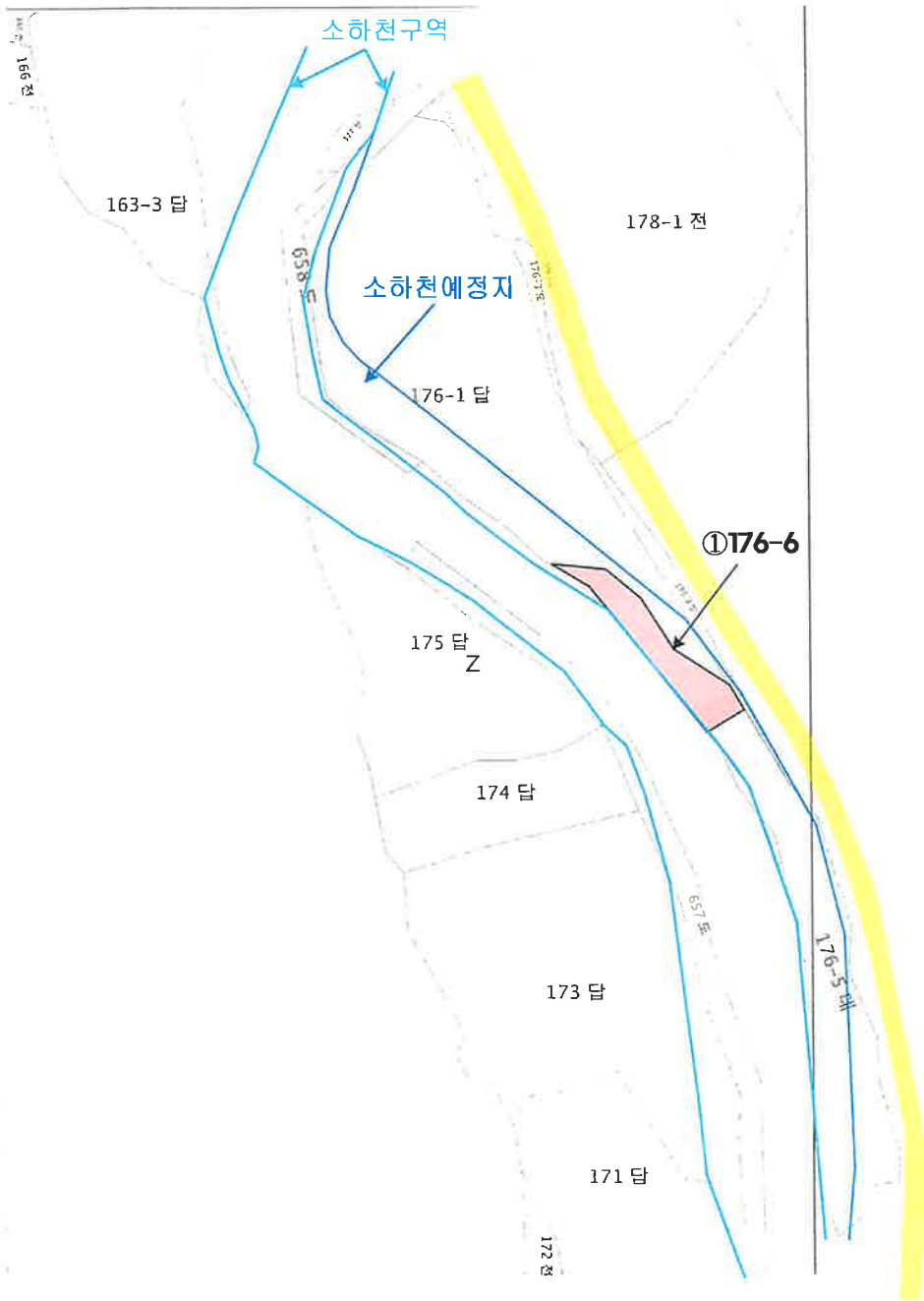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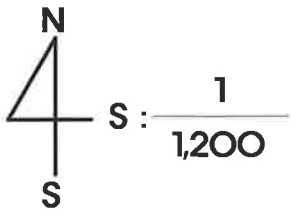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176-6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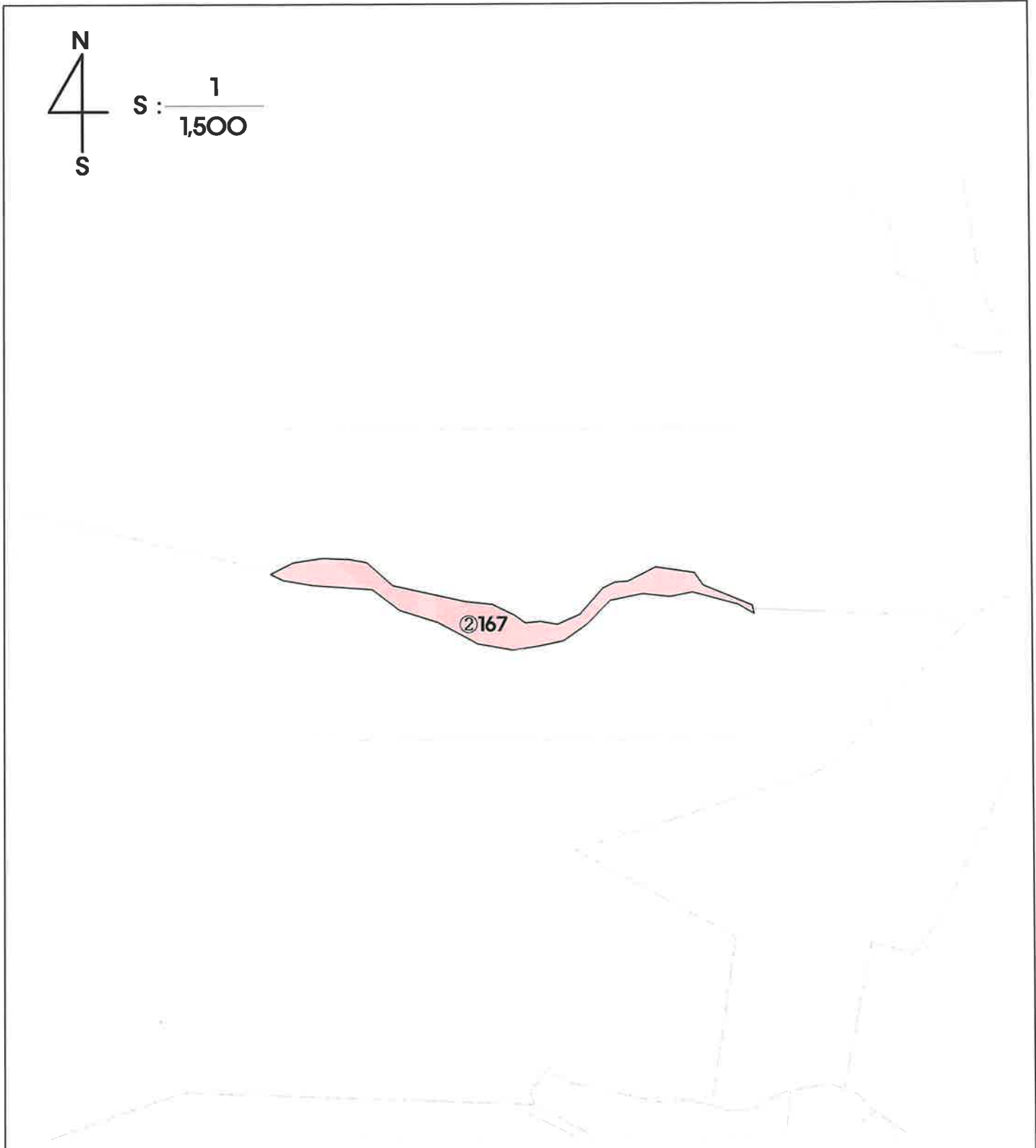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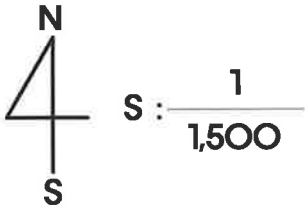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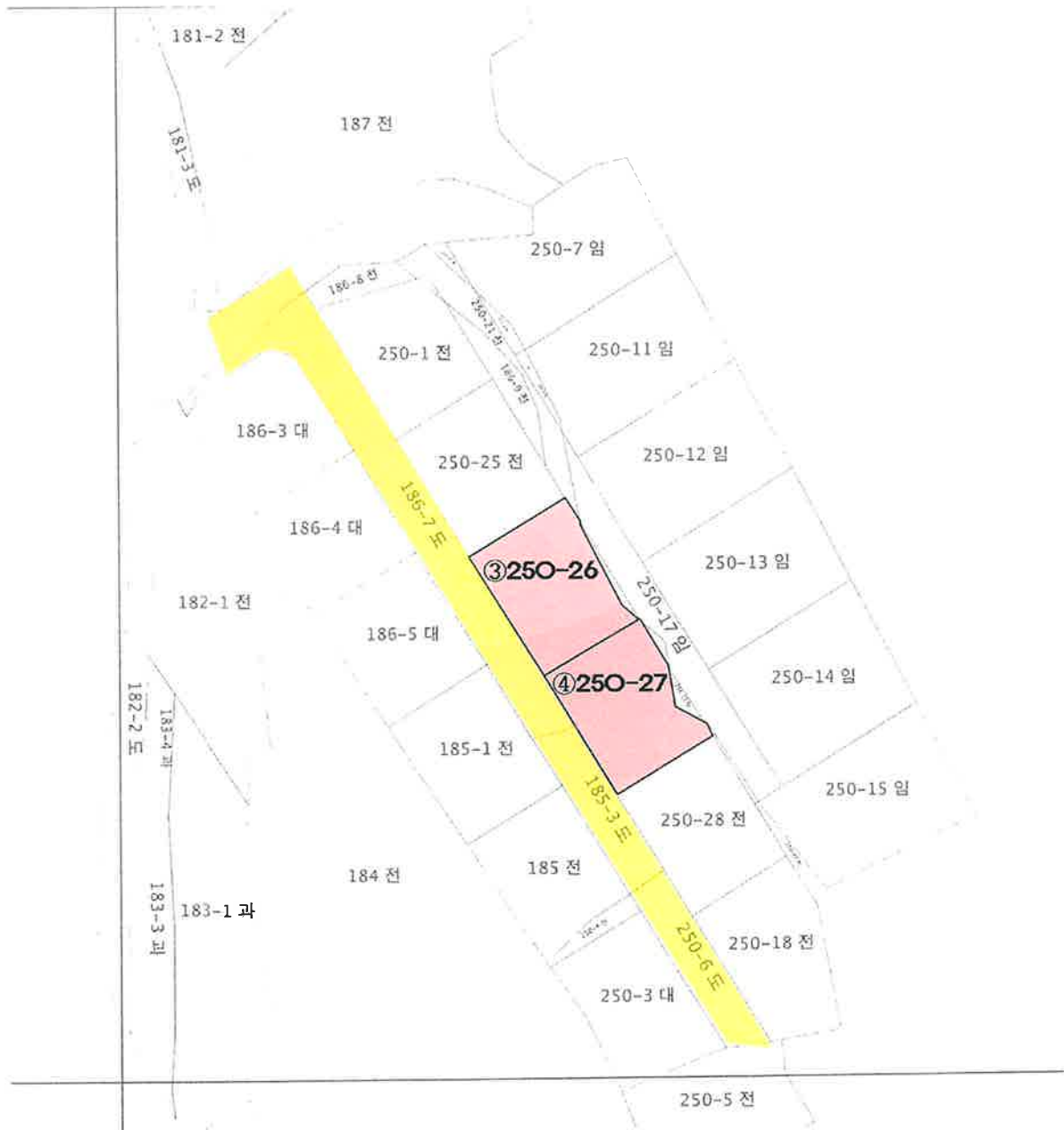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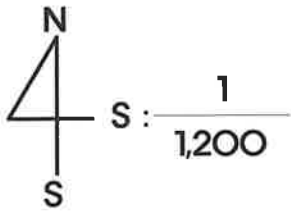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 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 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 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일련번호(1) 토지 전경 및 동측 도로상황



일련번호(1)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일련번호(1) 토지 지상 이동 용이한 정자①

사진용지



일련번호(2) 토지 전경



일련번호(2) 토지 전경 및 비닐하우스

사진용지



일련번호(3) 토지 전경_1



일련번호(3) 토지 전경_2



일련번호(3) 토지 전경_3



일련번호(3) 토지 전경 및 비닐하우스

사 진 용 지



일련번호(4) 토지 전경



일련번호(3) 토지 지상 이동 용이한 정자②



일련번호(3) 제시외 수목



일련번호(3, 4) 서측 도로상황